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및 국방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 국방전략위원회가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위원회와 정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8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 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1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u>